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공부문 청년고용 의무규정 연장 〉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87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공부문 청년고용 의무규정 연장	2

I. 제안경위

2025년 9월 30일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제도가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미취업 청년 고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Ⅲ. 검토의견

1. 공공부문 청년고용 의무규정 연장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u>2026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 ----- <u>2029년 12월 31일</u> ----- -----.

나. 검토의견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경영합리화 조치를 통하여 경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년고용의무제도는 2013년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 당시 개정조문의 유효기간을 2016년까지 한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계속 연장되어 왔으며, 현행 법률은 2023년 개정된 것으로 그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년층 고용률이 정체¹⁾되는 등 청년실업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동 제도의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개정안은 공공부문 청년고용 의무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미취업 청년 고용촉진에

1)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0월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8개월 연속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남.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청년층의 취업난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도가 종료될 경우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의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공공부문은 청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로 인식되어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신호효과가 큰 만큼, 본 제도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의 상징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청년 고용의 필요성과 공공기관 등 현장의 수용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저성장 기조 속 일자리 창출력 저하 등으로 청년고용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청년고용 창출 의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9